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204

제출년월일 : 1993. 1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改正理由

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폐지된 직의 위원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, 토지평가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主要骨子

- 제3조 제1항 1호 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무1과장”으로, “토지관리과장”을 삭제하며 당연직 위원수를 “7명”에서 “6명”으로 조정함.
-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간사를 “지가조사계장”에서 “지정계장”으로 개정함.

3. 關聯法規
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

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1호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무1과장”으로 하고, “토지관리과장”을 삭제하며, “(7명)”을 “(6명)”으로 한다.

동 조 동 항 2호 중 “5명이내”를 “6명이내”로 한다.

제7조 제2항 중 “지가조사계장”을 “지정계장”으로 하고, “토지관리과”를 “지적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생략 1. 당연직 위원 : 부구청장, 도시국장, <u>세무과장</u>, <u>지적과장</u>, <u>지역경제과장</u>, <u>토지관리과장</u>, <u>건설과장</u> (7명) 2. 위촉위원 :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<u>5명 이내</u> 제7조(간사등) ① 생략 ① 간사는 <u>지가조사계장</u>이 되며, 서기는 <u>토지관리과</u>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.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<u>현행과 같음</u> 1. 당연직 위원 : 부구청장, 도시국장, <u>세무1과장</u>, <u>지역경제과장</u>, <u>건설과장</u>, <u>지적과장</u> (6명) 2. 위촉위원 :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<u>6명 이내</u> 제7조(간사등) ① <u>현행과 같음</u> ① 간사는 <u>지정계장</u>이 되며, 서기는 <u>지적과</u>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.